예 산 총 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658,787,708	49,763,631
일반회계		1,447,438,261	43,423,148
특별회계		211,349,447	6,340,483
-	공기업특별회계	170,352,272	5,110,56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3,384,738	2,501,54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6,967,534	2,609,026
	기타특별회계	40,997,175	1,229,915
	주택사업특별회계	81,000	2,43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207,041	306,211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850,000	325,500
	교통사업특별회계	16,987,000	509,610
	대지보상특별회계	500,000	15,000
	수질개선특별회계	1,668,134	50,044

- 제 2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 조 201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 제 4조 201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해당없음』으로 한다.
- 제 6 조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9,177,227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2019년도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4,7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